

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5월 2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1년 06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1년 06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과 운영기준의 개정사항 반영 및 위임범위 일탈 조문 정비 등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등 위임범위 일탈 조문 개정
 - 1) 용도폐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조항 삭제 (안 제5조제2항제4호)
 - 2)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운영기준에 맞게 수정 (안 제31조제3항)
 - 3) 대부료 등의 납기 수정 (안 제35조제2항, 제3항, 제4항)

○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위임조문 개정

- 1) 위임 법령 명시 (안 제1조)
- 2) 읍·면장 처분권한 삭제 (안 제3조제1항)
- 3)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주민 공개 의무 신설(안 제7조제2항)
- 4) 대부료·사용료 감경 대상 및 감경을 확대 (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)
- 5) 대부료·사용료 조정 범위 확대 (안 제34조제1항)
- 6) 3급 관사 중 공중보건의 숙소 운영비 지원 근거마련 (안 제56조제2항)
- 7) 준용 규정 삭제 (안 제67조)

○ 운영기준에 따라 보존부적합 수의매각 기준 정비 (안 제40조)

- 1) 좁고 긴 모양의 토지 수의매각 문구정비 (안 제40조제2호)
- 2) 사유건물이 점유한 부지 매각 기준 정비 (안 제40조제4호)
- 3) 종교용도 수의매각 기준 신설 (안 제40조제9호)
- 4) 사도에 편입된 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 신설 (안 제40조제10호)

○ 용어변경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

- 1) 조직개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정 (안 제4조)
- 2) 용어 및 띄어쓰기 (안 제8조제1항, 안 제13조제1항, 안 제18조, 안 제22조제2항)
- 3) 상위법령 인용 조문 수정(안 제20조제2항, 안 제22조제4항, 안 제32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진)

○ 본 조례안은

상위법령과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

위임범위 일탈 조문 정비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첫째,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등 위임범위 일탈 조문에 대한 개정으로

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는

기존,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등에 대한 용도폐지, 용도변경에

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가능 조항은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: 법)의 위임범위 일탈한 것으로

삭제하며

안 제31조제3항에서는

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기존,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합산 금액을

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(이하 : 운영기준) [별표3]에 맞게

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

것입니다.

안 제3조제1항에서는

군수의 매각처분권에 어긋나는 기존의 읍·면장의 매각처분 규정을

삭제하였습니다.

둘째,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부분으로

안 제35조제2항, 제3항, 제4항에서는

대부료 분할 납부에 있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:시행령)

개정을 반영하여

기존의 ‘금액에 따라 분납회수에 차이를 둠’에서 100만원 초과에 대하여 6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안 제7조제2항에서는

법 제92조에서는 ‘지자체 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주민 공개 의무’을 신설하였고

이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공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
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

시행령 17조에서 지자체 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경사유를 신설 규정함에 따라

이를 반영하여 대부료·사용료 감경 대상 및 감경율을 확대하였습니다.

안 제34조제1항에서는

시행령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

사용료·대부료의 사용료 조정을 전년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금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
안 제56조제2항에서는

기존 1급 2급에 관사 보일러 운영비, 전기요금 등의 관사운영비 지원을 3급 관사 중 공중보건의 숙소 운영비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3급 관사까지 운영비 지원하는 강원도 내 입법례로는 강원도, 태백, 속초, 홍천, 철원이 있습니다.

셋째, 운영기준에 따라 보존부적합 수의매각 기준 정비로

안 제40조에서는

제2호의 좁고 긴 모양의 토지 수의매각 구문정비

제4호 사유건물이 점유한 부지 매각 기준 정비

제9호 종교용도 수의매각 기준 신설

제10호 사도에 편입된 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 신설을 하는 것으로
운영기준 제16조와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 및 신설입니다.

○ 본 조례안은

상위법령 및 운영기준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며, 상위법령에 어긋난
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평창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군수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·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재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국장”으로, “호선하여 선정하며,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”를 “호선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”를 “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재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 중 “재산관리담당”을 “재산관리팀장”으로 한다.

3.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대부재산”을 “공유재산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관리관은”을 “재산관리관은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행정재산·보존재산”을 “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기구

제22조제2항 중 “행정·보존재산”을 “행정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 제27조제4항”을 “법 제27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”를 “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”로, “합하여”를 “합산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산출산식”을 “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”으로, “호와 같다”를 “호의 산출산식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① 건물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.

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”를 “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”로, “대부하는”을 “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30
2.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50
3.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

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: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대부료의 100분의 50
 - 가.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
 - 나. 영 제29조제1항제20호·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
 - 다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
3.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: 대부료의 100분의 30

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**”를 “**전부 감액한다**”로 한다.

제35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**대부료를**”을 “**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**”으로,

“분”을 “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
제40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(「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)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. 이 경우,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, 건축면적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라 「평창군 군계획 조례」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.

제40조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
10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는 3급 관사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7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,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평창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·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군수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·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.</p>
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</p>	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(생략)

2.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,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,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<신설>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,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④ (생략)

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

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행정지원국장-----

호선한다.

3.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③ -----

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~ ⑪ (생략)

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.

제5조(심의회의 업무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

가.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
나.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

다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(각 개별 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)시 취득·처분하기로

----- 행
정지원국장-----.

⑥ ~ ⑪ (현행과 같음)

⑫ -----

----- 재산관리팀장-----

-----.

제5조(심의회의 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미리 협의된 재산

제7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) (생략)

<신 설>

제8조(실태조사)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)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(도로, 하천 등)으로 취득(보상취득)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8조(관리 및 처분) 관리책임

제7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(실태조사) ① -----

----- 공유 재산 -----
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) ① -----

----- 재산관 리관은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관리 및 처분) -----

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·보존재산의 유지·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(생략)

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는 군과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하여야 한다.

1. 「외국인토지법 시행령」 제2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국제기구

2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22조(관리위탁 행정재산) ① (생략)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

행정재산

--.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
1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기구

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관리위탁 행정재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
행정재산

징수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·⑥ (생략)

제31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

가.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

나.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

2.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27조제6항-----
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 건물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 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가.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

나.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

다.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

라.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

3.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

4.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

가.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

나.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

다.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

5.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

가.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

나.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

다.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

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
⑤ (생략)

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 삭제

②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
③ 영 제17조제6항, 영 제35조 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의 생산·전시·판매를 위하여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

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-----

---- 합산하여 -----
-- . -----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-----
호의 산출산식에 따른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

②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 -----

----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30

을 감면 할 수 있다.

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, 제22호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, 제20호,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
2.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50

3.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

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: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대부료의 100분의 50

가.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

나. 영 제29조제1항제20호·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

다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분납

2. 200만원 초과 : 6월 이내 3회

분납

3. 300만원 초과 : 9월 이내 4회

분납

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
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
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
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
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
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
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
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
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
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
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
일정 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
할 수 있다.

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
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
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
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
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삭 제

② ----- 연간
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
경우에는 -----

---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
를 분-----.

<삭 제>

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
있는 경우) -----

-----.

2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,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
3. (생략)

4.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,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(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·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

2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
3. (현행과 같음)

4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(「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)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. 이 경우,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, 건축면적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라 「평창군 군계획조례」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

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
매각을 할 수 있다.

<삭 제>

가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
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
자가 점유·소유한 건물로
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
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
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
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. 이
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
가 「건축법」 제57조제1
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
에 미달되거나 건축면적이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
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
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
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
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
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
매각을 할 수 있다.

나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
터 공유재산 이외의 자가
소유한 건물이 5가구 이상
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
일단의 토지 면적이 3,000
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

<삭 제>

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
가목의 매각 범위에서 건
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
각 할 수 있다.

5. ~ 8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5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(생략)

<신설>

제67조(준용) 균유재산의 취급에
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
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
질의회신·지침·편람 등을 준
용할 수 있다.

5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
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
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
을 그 점유·사용하고 있는
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10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
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
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
에게 매각하는 경우

제5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①
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
건의가 사용하는 3급 관사의 경
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1항 각
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
지원할 수 있다.

<삭제>